
6 () 1 ,

. < 2008.2.29, 2010.3.15 >

[2007.2.8]

7 () • 5 3 1

. < 2008.2.29,

2010.3.15 >

1. 「 」

2. 「 」

3. 가

4. 「 」

[2007.2.8]

8 <2002.2.25>

9 <2007.2.8>

10 () 7

. < 2007.2.8, 2008.2.29, 2010.3.15 >

1. 「 」

2.

1 1 1 , 1 2

.

11 () 10 2

7 2

가 , 가

. < 2002.2.25, 2008.2.29, 2010.3.15 >

12 () 8 3 ()

" ") (" ") .) .

1. 「 」 (" ")

2. 14 1 2

[2008.12.31]

13 () 8 4

「 」 1

. < 2007.2.8 >

14 () 9 1

. < 2001.6.30, 2007.2.8, 2008.2.29, 2008.12.3, 2008.12.31, 2009.4.17, 2010.1.27, 2010.3.15 >

1.

2. 60 (1 2) [「 」
1 「 」
1 「 」
1 (" ") ,
]

3. . . . () .

4.

「 」 1

가 . < 2007.2.8, 2008.12.31 >

1 1 . 2 4 .

, 8 3

. < 2001.6.30, 2008.12.31 >

「 」 가 1 3

. < 2001.6.30, 2007.2.8, 2008.12.31 >

가 9 1

가

< 1998.2.28, 2008.2.29, 2008.12.31, 2010.3.15 >

15 () 9 2 가

1. 19

2. 가

3. 9 4 . ,
가 19 .

16 <2002.2.25>

17 () 12

- 1. .
- 2.
- 3.
- 4.
- 5.
- 6.
- 7.

18 () 12 2 3

2 .

.< 2010.3.15>

[2008.12.31]

18 2(가) 12 3 가 (" "

) 1 . < 2010.3.15>

12 3 1

.< 2010.3.15>

1. 가 .

2. 가 . 가

2 (" ")

30 .< 2010.3.15>

12 3 4

3 .

4 , 6

[2008.12.31]

18 3() 12 3 4 4 .

(

) .

.< 2010.3.15>

1.

2.

[2008.12.31]

18 4()

1

[2008.12.31]

18 5()

가.

[2008.12.31]

19 () 16 (" ")

.< 2008.2.29, 2010.3.15>

20 () 3 가 가

.< 2008.2.29, 2010.3.15>

.< 2008.2.29, 2010.3.15>

1

가 2

21 ()

1.

2.

3.

1. 가

2.

3.

1. 가

2. 가

3. 가

2 4

. < [2008.2.29, 2010.3.15](#) >

22 () (" ") . 가
1

1. 가

2.

. . 15 16

(" ") 가 ,
가 가 가

. < [2008.2.29,](#)

[2010.3.15](#) >

23 () 18 1 4 " "
. < [2008.2.29, 2010.3.15](#) >

1.

2.

3.

24 <[2002.2.25](#)>

25 <[2002.2.25](#)>

26 () 22 (" ")

. < [2002.2.25, 2008.2.29,](#)

[2010.3.15](#) >

27 () . . < [2008.2.29,](#)

[2010.3.15](#) >

[[2002.12.30](#)]

27 2() 23 2
(" ") 100

120(100 110) .

1.

가. 23 3

.

2.

가. 23 3

.

.< 2008.2.29, 2010.3.15 >

1.

2.

3.

가

4.

5.

6.

. . . .

가

(" ")

,

.< 2008.2.29,

2010.3.15 >

[2007.2.8]

27 3(

가)

.< 2008.2.29,

2010.3.15 >

1.

가

. , .

.

2.

3.

. . . .

,

.

가 가 「

」 86 .

"

" "

"

.< 2010.9.20 >

[2007.2.8]

27 4(

)

3

3

가

가

.< 2008.2.29,

2010.3.15 >

[[2007.2.8](#)]

27 5() 27 2 가
·가 .

[[2007.2.8](#)]

28 <[2007.2.8](#)>

29 <[2007.2.8](#)>

30 () 25 1 9

1.

2. 27 .

3.

31 () 29 1 .

. <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

1. 7 .

가 「 」 9 1 9

2. 9 1 ()

<[2002.2.25](#)>

32 () 29 2 2

. < [2008.2.29](#), [2008.12.31](#), [2010.3.15](#) >

1. 6 1

2. 12 1

3. 12 2 1

4. .

5. 20

6.

29 2

. < [2002.2.25](#), [2007.2.8](#), [2008.2.29](#), [2008.12.31](#), [2010.3.15](#) >

1. 「 」
2. 「 」 ()
- 3.
- 4.

33 () 34 5 .
 [[2008.12.31](#)]

< 22394 ,2010. 9.20 >

- 1 () 2011 1 1 .
- 2 11
- 12 ()

27 3 2 " 「 」 33 " " 「 」 86 " .

13

[별표 2] <개정 2010.3.15>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별표 1]

광고의 기준(제10조제2항관련)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3.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5.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 가.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 나.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7.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9.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는 행위.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3] <신설 2008.12.31>

보건교육사 시험과목(제18조의2제4항 관련)

구분	시험 과목
보건교육사 1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 의사소통, 보건 의료법규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 의료법규

[별표 4] <개정 2010.3.15>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18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 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 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 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 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 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